

※ 바로 잡습니다.

※ 2024년 세액공제·감면 바이블 (저자 : 김선명·김준성·민규태) 교재 정정사항 안내

p.239 ~ 240

4) 사후관리

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(1)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: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

① 감소한 청년등근로자 수 \geq 감소한 상시근로자수

$$A - B + C$$

A: [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-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]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[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-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]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C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② 그 밖의 경우

$$A + B$$

A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)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(2)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

$$A - B$$

A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※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, 제2호의 계산식

1.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100
2.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)